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5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허종식 · 위성곤 · 김한규
이해식 · 김남근 · 서영석
이재관 · 한준호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
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
2. 그 밖에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제23조(검정)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략)

<신 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8. (생략)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3항-----

7.·8. (현행과 같음)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

<u>리) (생 략)</u>	<u>리 및 교육훈련) ① (현행 제목</u>
<u><신 설></u>	<u>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u>
	<u>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u>
	<u>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u>
	<u>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u>
	<u>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u>
	<u>영할 수 있다.</u>